공유재산(풍암매립장 부지)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

▣ 제안이유

○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
○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(풍암매립장 부지)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▣ 주요골자

○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 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년간 토지 매수비에 상당하는 임차료 1,460백만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1,6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수 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므로서 앞으로 타 지역 매입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

○ 인근 300m 이내가 월드컵경기장과 대형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으로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풍암매립장 부지를 매수하고자 함.

▣ 검토보고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였음.

○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풍암매립장 부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답34번지 등 25필지 면적 25,965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 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 이용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'95년도부터 임차료를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지불하고 있고

○ 풍암동 매립장 주변이 월드컵 경기장과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저해되므로 이에 따른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

○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비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 추진은 행정력 및 예산낭비라 판단되므로

○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대상토지를 매수후 운동장 등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보전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취득관리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심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.